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

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보건소,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건강진단 실시) (생 략)	제3조(건강진단 실시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 행하여 보건소,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받을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 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